KOSHA GUIDE

C - 49 - 2012

안전대 사용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'법'이라 한다)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'안전보건규칙'이라 한다)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사용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벨트"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.
- (나) "지탱벨트"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 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.
- (다) "D링"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.
- (라) "각링"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 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.